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AI 민주정부 실현 과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의 공공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고보조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안전관리 과정에 드론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부혁신 추진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참여혁신조직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정원 관리를 위하여 참여혁신조직실 조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24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재난 복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복구지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재난현장지원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재정경제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중 2개 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3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자치혁신실과 지방재정경제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5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

술직군·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7호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공공서비스혁신과·행정정보공유과 및 국민맞춤서비스과”를 “공공서비스혁신과·행정정보공유과·국민맞춤서비스과 및 통합포털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⑬ 통합포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포털 서비스 개선 및 통합 제공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2. 전자정부 포털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포털 이용 제고를 위한 통합창구 등 신기술 도입·구축
4. 전자정부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포털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포털 연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포털 공통기반시스템 및 타기관 시스템 연계·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포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의 등록·관리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균형발전제도과·균형발전진흥과 및 기본사회정책과”를 “균형발전제도과·균형발전진흥과·기본사회정책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 ㉔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관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유통 및 주소전환·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융합·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협회·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18.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20.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1.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2.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24.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지원

제11조제3항 중 “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교부세과·회계계약제도과”를 “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교부세과·회계계약제도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2. 지방재정·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3.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8. 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⑮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2.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3. 지방세무행정·지방세외수입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납부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9. 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사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제11조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지방세정책과·부동산세제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지방세정책과·부동산세제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세특례제도과 및 지방세입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4항) 중 “지역경제과·민생경제지원과·지방공기업정책과·지방공공기관관리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를 “지역경제과·민생경제지원과·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중전의 제15항)제1호 중 “경제활성화”를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중전의 제16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참여혁신국)”을 “(참여혁신조직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참여혁신국장”을 “참여혁신조직실장”으로, “등급은 나등급”을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제12호 중 “국”을 “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여혁신국장 및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⑨ 조직국에 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안전조직과 및 법사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시행
12.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13.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1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19. 외국 정부의 조직·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0.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5.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16.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17.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8.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

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⑫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⑬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⑭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⑮ 법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사법 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법무·사법 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9조의2제8항제13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복구지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현장지원관으로 하며, 재난현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난현장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3항제20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복구지원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보좌한다.

④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과·재난현장지원총괄과·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를 두되, 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⑧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피해자 지원정책 총괄 및 계획 수립·시행
2. 재난현장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4.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관련 관계부처 등 협업체계 구축
5. 재난현장지원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6.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7. 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제도 운영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8. 재난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서 등 발간 및 관리
9.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10.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관리
11.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
12.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관리

제19조의3제5항(중전의 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9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습지원과장”을 “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습지원 계획”을 “재난현장지원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습 분야별”을 “현장지원 분야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수습사례”를 “재난현장지원 사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습관리과장”을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습지원 계획”을 “재난현장지원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습 분야별”을 “현장지원 분야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습사례”를 “재난현장 지원 사례”로 한다.

6의2.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제41조제2항 중 “각 과장”을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으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로 한다.

제54조제6호 중 “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를 “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

제13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삭제한다.

제56조제3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재정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1,653”을 “1,702”로 하고, 일반직 계 “1,623”을 “1,67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6”을 “38”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1”을 “5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4”를 “1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0”을 “51”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0”을 “70”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9”를 “171”로,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8”을 “12”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35”를 “41”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3”을 “208”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및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각각 “15”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국회협력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53”을 “1,702”로 하고, 일반직 계 “1,623”을 “1,67

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6”을 “38”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1”을 “5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4”를 “1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5”를 “56”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0”을 “70”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6”을 “168”로,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8”을 “12”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35”를 “41”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3”을 “208”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및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를 각각 “15”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국회협력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8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을 “2”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를 신설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8”을 각각 “10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7”을 “99”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삭제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5호, 제19조의2제8항제13호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제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①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 50% ※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결과값을 0으로 본다. *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 총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1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5조 관련)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참여혁신조직실	2명 (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재난복구지원국 재난현장지원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 참여혁신조직실 조직국 법사조직과	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라.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 비스국 통합포털정책과	10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마.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새마을협력과	0명	2026년 9월 30일까지
바.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공유 재산정책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 재난복구지원국 재난현장지원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7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	0명	2026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14]

행정안전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6조 관련)

1. 제56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2. 제56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3. 제56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

4. 제56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① ~ ⑤ (생략)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7. ----- <u>분과위원회</u> -----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u>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u> -----
9. ~ 14. (생략)	9. ~ 14. (현행과 같음)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삭 제>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행정정보공유과 및 국민맞춤서비스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⑨ ----- <u>공공서비스혁신과·행정정보공유과·국민맞춤서비스과 및 통합포털정책과</u> ----- -----.
⑩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신 설>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신 설>

<신 설>

1. ~ 21. (생략)

⑪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19.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20.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22. ~ 25. (생략)

⑫ 국민맞춤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창구 시스템 구축

4. ~ 9. (생략)

10.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신 설>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4. ~ 24. (현행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⑪ -----
-----.

1. ~ 18.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22. ~ 25. (현행과 같음)

⑫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9. (현행과 같음)

<삭 제>

⑬ 통합포털정책과장은 다음 사

⑬ ~ ⑯ (생 략) 제10조(자치혁신실) ① ~ ③ (생	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포털 서비스 개선 및 통합 제공 등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등 2. 전자정부 포털의 안정적 운 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포털 이용 제고를 위한 통합창구 등 신기술 도 입·구축 4. 전자정부 포털 이용 활성화 를 위한 교육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포털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포털 연계기관 협 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포털 공통기반시스 템 및 타기관 시스템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포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의 등록·관리 관 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⑭ ~ ⑰ (현행 제13항부터 제1 6항까지와 같음) 제10조(자치혁신실) ① ~ ③ (현	략)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 10. (생 략) ⑤ 자치새마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 영 지원 2. ~ 28. (생 략) ⑥ ~ ⑱ (생 략) ⑳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제도 과·균형발전진흥과 및 기본사 회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 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㉑ ~ ㉓ (생 략) <신 설>	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 영 지원 3. ~ 10. (현행과 같음) ⑤ ----- -----. 1.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2. ~ 28. (현행과 같음) ⑥ ~ ⑱ (현행과 같음) ⑳ ----- 균형발전제도 과·균형발전진흥과·기본사회 정책과 및 주소정보혁신과----- -----. ㉑ ~ ㉓ (현행과 같음) ㉔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 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	---	---	--

- 구축·관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유통 및 주소전환·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융합·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협회·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

- 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18.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20.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1.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2.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①·② (생략)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교부세과·회계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⑤ (생략) <신설>	에 관한 사항 23.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24.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지원 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교부세과·회계계약제도과-----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2. 지방재정·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3.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⑥ ~ ⑧ (생략) ⑨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부동산세제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 ~ ⑬ (생략) <신설>	청구 등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8. 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과 같음) ⑩ ----- 지방세정책과·부동산세제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세특례제도과 및 지방세입정보과----- -----. ⑪ ~ ⑭ (현행 제10항부터 제13항과 같음) ⑮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
---	--	--	---	--

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2.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3. 지방세무행정·지방세외수입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납부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9. 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사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⑭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민생경제지원과·지방공기업정책과·지방공공기관관리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⑮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지원
 2. ~ 7. (생략)
 8.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10.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12.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⑯ ----- 지역경제과·민생경제지원과·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

-----.
- ⑰ -----
-----.
1. -----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

2. ~ 7.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13. (생 략)

⑯ 민생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6. ~ 15. (생 략)

⑰ ~ ⑱ (생 략)

⑲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관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유통 및 주소전환·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

8. (현행 제13호와 같음)

⑳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15. (현행과 같음)

⑲ ~ ⑳ (현행 제17항부터 제18항과 같음)

<삭 제>

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융합·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협회·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

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18.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19.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지원

제12조(참여혁신국) ① 참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② (생략)

③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 ⑦ (생략)

<신 설>

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 ① 참여혁신조직실장-----

----- 직무등급은 가등급-----

--.

② 참여혁신국장 및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실 -----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⑨ 조직국에 조직기획과·조직

<신 설>

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안전조직과 및 법사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 제공 및 관리
1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
의 수립·시행
12.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
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13. 공무원 충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1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
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
건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
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
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
개선
19. 외국 정부의 조직·정원 관
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0.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

<신 설>

- 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
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
무원의 정원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⑪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
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
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
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및 운영

<신 설>

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 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5.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16.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17.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8.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 ⑫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신 설>

- 분장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 ⑬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신 설>	<u>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5. <u>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u> ⑭ <u>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2. <u>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u>		<u>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 및 안전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③ <u>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u>	
<신 설>	⑮ <u>법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법무·사법 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2. <u>법무·사법 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u>		2. <u>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u> 3. <u>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u> 4. <u>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u>	
			5.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u> 6. <u>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u> 7. <u>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u>	
제13조(조직국) ① <u>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u>조직국에 조직기획과·조직</u>		<삭 제>	7의2. <u>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u> 8. <u>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u>	

9.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
의 수립·시행

11.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
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12. 공무원 충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1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
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1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
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5.

1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
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
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19.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
개선

20. 외국 정부의 조직·정원 관
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
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2.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
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
무원의 정원 관리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
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
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
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와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
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
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
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삭제

16.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7.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
구기관의 지정·운영

18.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
에 관한 지원

19. 통계·특허 분야 등 행정기
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
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0. 통계·특허 분야 등 행정기
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

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
원 관리

⑤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
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
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
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의 정원 관리

⑥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
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

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⑦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 ~ ④ (생략)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6. ~ 9. (생략)
⑥ ~ ⑩ (생략)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기획예산처 ----- -----
6. ~ 9.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 ~ ⑦ (생략)
⑧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금융통신등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가목·나목·마목·아목 및 어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과 같은 호 터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우주항공청 또는 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사회재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4. ~ 26. (생략)
⑨ ~ ⑫ (생략)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생략)
②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과·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를 두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 ----- ----- ----- --- 재정경제부----- ----- ----- ----- ----- ----- -----
14. ~ 26.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복구지원국장 밑에 두는 보

며, 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수습지원과장 및 수습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신 설>

<신 설>

좌기관은 재난현장지원관으로 하며, 재난현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난현장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3제3항제20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복구지원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보좌한다.

④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과·재난현장지원총괄과·사회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를 두되, 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부이사관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피해주민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8. ~ 22. (생 략)
-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9.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관리
10. ~ 19. (생 략)

⑤ (생 략)

<신 설>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⑤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22. (현행과 같음)

⑥ -----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0. ~ 19. (현행과 같음)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재난현장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피해자 지원정책 총괄 및 계획 수립·시행
2. 재난현장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

	<u>축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u> 4. <u>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u> <u>운영 관련 관계부처 등 협업</u> <u>체계 구축</u> 5. <u>재난현장지원 역량 평가에</u> <u>관한 사항</u> 6. <u>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정책</u> <u>및 제도 운영</u> 7. <u>재난피해자 간접지원 제도</u> <u>운영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u> <u>·조정</u> 8. <u>재난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u> <u>서 등 발간 및 관리</u> 9. <u>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u> <u>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u> <u>립</u> 10. <u>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u> <u>업의 운영·관리</u> 11. <u>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u> <u>성·운영</u> 12. <u>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u> <u>관리</u>
⑥ <u>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u> 분장한다. 1. <u>사회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u> <u>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u>	⑨ <u>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u>----- -----. 1. ----- ----- <u>재난현장지원</u>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3. (생 략) 4. <u>사회재난 수습 분야별 행동</u> <u>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지</u> <u>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u> <u>정 지원</u> 5.·6. (생 략) 7. <u>사회재난 수습 정책 연구개</u> <u>발</u> 8.·9. (생 략) 10. <u>국내외 사회재난 피해 및 수</u> <u>습사례 수집 및 분석</u> ⑦ <u>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u> 분장한다. 1. <u>자연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u> <u>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u> <u>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u> <u>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u> 2. (생 략) 3. <u>자연재난 수습 분야별 행동</u> <u>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지</u> <u>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u> <u>정 지원</u> 4. <u>자연재난 수습 정책 연구개</u>	<u>계획</u> ----- ----- 2.·3. (현행과 같음) 4. ----- <u>현장지원 분야별</u> -- ----- ----- ----- 5.·6. (현행과 같음) <삭 제> 8.·9. (현행과 같음) 10. ----- <u>재</u> <u>난현장지원 사례</u> ----- -- ⑩ <u>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u>----- -----. 1. ----- ----- <u>재난현장지원</u> <u>계획</u> ----- ----- 2. (현행과 같음) 3. ----- <u>현장지원 분야별</u> -- ----- ----- ----- <삭 제>
--	---

발 5.·6. (생 략) <신 설> 7. 국내외 자연재난 피해 및 수습사례 수집 및 분석 제41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① (생 략)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5.·6. (현행과 같음) 6의2.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7. ----- 재 난현장 지원 사례 ----- 제41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 -----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 <신 설>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기획협력과·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지방세입정보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및 지방세입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 사회 재난현장지원과 및 자연재난현장지원과----- 7.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 제13장 한시정원 <삭 제>
--	---	---	--

사업의 총괄·조정

2.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3.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4.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 마련 및 시행
 5.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적용방안 마련 및 시행
 6.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 활용 방안 마련·시행
 7.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지방재정·지방보조금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정책 수립·협의·조정 등 연계 업무 총괄
5.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7. 차세대 지방재정·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 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5.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6.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구성 · 운영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재정 · 지방보조금 및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차세대 지방재정 · 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세무행정 · 세외수입행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부가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통합 표준 수납 관리체계의 마련 및 시행
 8. 차세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⑦ 삭제
- ⑧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제56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제56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③ ----- ----- ----- ----- 2028년 2월 29일----- ----- --.
<신설>	④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재정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653	1,702	+49
·	·	·	
·	·	·	
일반직 계	1,623	1,672	+49
고위공무원단	36	38	+2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1	56	+5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4	18	+4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0</u>	<u>51</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0</u>	<u>70</u>	+20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9</u>	<u>171</u>	+2
·	·	·	
·	·	·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8</u>	<u>12</u>	+4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35</u>	<u>41</u>	+6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3</u>	<u>208</u>	+5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4</u>	<u>15</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 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4</u>	<u>1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전문경력관 가군(국회협력 담당)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53</u>	<u>1,702</u>	+49
·	·	·	
·	·	·	
일반직 계	<u>1,623</u>	<u>1,672</u>	+49
고위공무원단	<u>36</u>	<u>38</u>	+2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1</u>	<u>56</u>	+5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4</u>	<u>18</u>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5</u>	<u>56</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0</u>	<u>70</u>	+20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6</u>	<u>168</u>	+2
·	·	·	
·	·	·	
행정주사·세무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8</u>	<u>12</u>	+4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35</u>	<u>41</u>	+6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03</u>	<u>208</u>	+5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4</u>	<u>15</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 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4</u>	<u>15</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u>전문경력관 가군(국회협력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u>	<u>2</u>	-1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또는 수석전문관</u>			
.	.	.	
.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8</u>	<u>100</u>	+2
일반직 계	<u>98</u>	<u>100</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7</u>	<u>99</u>	+2